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한국상하수도협회

업무규정

제정	2003.10.22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15호
개정	2005.03.31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24호
전문개정	2007.10.30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36호
개정	2011.03.2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43호
개정	2016.12.14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74호
개정	2017.07.05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79호
개정	2019.02.28	한국상하수도협회	규정 제8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수도법시행령 제60조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정관 제4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용기자재(이하 “제품” 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하수도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4>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단체표준화”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제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제품 또는 제품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제품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6.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개정 2016.12.14>

제2장 위원회 등

제3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 ① 협회에 단체표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03.31., 2011.03.23., 2017.07.05., 2019.02.28>

업무규정

② 심사위원회는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03.31.>

③ 기타 단체표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03.31., 2017.07.05>

④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23., 2017.07.05>

⑤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03.31., 2017.07.05>

제4조 (단체표준인증위원회) ① 협회에 단체표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인증위원회 (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07.05>

② 인증위원회는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07.05.>

③ 인증위원회는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07.05.>

④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07.05.>

⑤ 인증위원회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07.05>

⑥ 인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07.05.>

제5조 (공평성위원회) ① 협회에 단체표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이하 “공평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02.28.>

② 공평성위원회는 단체표준 인증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02.28.>

③ 공평성위원회는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02.28.>

④ 공평성위원회는 인증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02.28.>

⑤ 공평성위원회는 기타 제품인증 업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02.28.>

⑥ 공평성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업무규정

2019.02.28.>

⑦ 공평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02.28.>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6조 (단체표준의 제정범위) 협회가 제정할 수 있는 단체표준 (이하 “표준”이라 한다)의 제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2.28.>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 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12.14>

2. 제품의 표준이 다른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12.14>

3.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협회는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제정 또는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6.12.14., 2017.07.05., 2019.02.28.>

②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협회에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5.03.31>

제8조 (심사위원회의 회부 등) ① 협회는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 단체표준 최종안을 확정한다.<개정 2005.03.31., 2017.07.05., 2019.02.28.>

제9조 (단체표준의 관리) ① 협회는 제정 또는 개정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05.03.31., 2016.12.14., 2019.02.28.>

② 협회는 KS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5.03.31., 2016.12.14>

제10조 (표준의 공지) 협회는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 또는 확인한 때에는 이를 공

업무규정

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3.31., 2017.07.05., 2019.02.28.>

제4장 단체표준 인증단체 운용요건

제11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운용요건) ①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단체로서 단체표준인증 및 단체표준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5.03.31., 2017.07.05., 2019.02.28.>

1. 시험설비의 확보
2. 인증심사원의 확보
3.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의 보유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전문설비 및 인력을 확보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03.31., 개정 2016.12.14>

제5장 단체표준표시의 인증

제12조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신청) ① 단체표준표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3., 2017.07.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14조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제13조 (신청의 철회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신청을 한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심사계획 통보 전에 요청한 때에는 협회는 관계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4., 2017.07.05., 2019.02.28.>

제14조 (인증심사) ① 협회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협회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 및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품질관리방법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4>

③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한다.

업무규정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단체표준인증업무 운용세칙 (이하 “운용세칙” 라 한다)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이하 “공장심사”라 한다.)<개정 2016.12.14>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이하 “제품심사”라 한다)<개정 2016.12.14>

제15조 (단체표준표시의 인증 등) 협회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판정기준 및 표준에 적합할 때에는 단체표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제16조 (이의신청) 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이 그 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7.05., 2019.02.28.>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 (사후관리) ① 협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개정 2011.03.23., 2016.12.14., 2017.07.05., 2019.02.28.>

② 협회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표시제거등의 명령) 협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특별현장조사 및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이 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및 인증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14., 2017.07.05., 2019.02.28.>

제19조 (인증의 취소) ① 협회는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업무규정

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개정 2017.07.05.>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특별현장조사, 시판품 조사등의 결과가 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개정 2005.03.31., 2017.07.05>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개정 2017.07.05., 2019.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안에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 (청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5.03.31., 2017.07.05., 2019.02.28.>

제21조 (인증서등의 반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 등을 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1. 당해 표준이 폐지된 때
2. 당해 인증이 취소된 때
3. 폐업한 때

제22조 (인증서등의 재교부 신청) 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등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용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3., 2016.12.14., 2017.07.05., 2019.02.28.>

1. 사유서
2. 단체표준표시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등<개정 2016.12.14>

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 등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운용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3., 2016.12.14., 2017.07.05., 2019.02.28.>

1. 사유서
2.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등<개정 2016.12.14>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규정

제23조 (승계) 제15조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제24조 (보고 및 감사)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7.05., 2019.02.28.>

제7장 보 칙

제25조 (수수료)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2조 규정에 의해 인증서등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비용, 수수료 또는 인증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4., 2017.07.05., 2019.02.28.>

② 제1항의 비용, 수수료 또는 인증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자체점검 등) 협회는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5., 2019.02.28.>

제27조 (공평성 관리)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공평성을 확보 및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9.02.28.>

② 제1항의 공평성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용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02.28.>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시 인용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05. 03. 3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규정

② 이 규정은 시행시 인용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07. 10. 30)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3)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4)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7. 05)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28)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